

1. 개정이유

「농지법」 개정(6.16.)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 음식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내 용도변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항목 추가
(안 제23조의2제2항)

나.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 신청 시 조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서류 보완(안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전용 허가 신청 시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인근 농지 등 운영 현황 제출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규정(안 제31조의3 신설)

* 농업진흥지역 밖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주민참여 협동조합 발전사업부지 포함) 내 농지에 설치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년 이내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된 농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9조제5항제4호”를 “영 제29조제4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9조제5항제5호”를 “영 제29조제4항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허가 부지 인근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운영현황(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
점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

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
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1.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호에 따
른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농지
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농지전용허가 등”을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
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로,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
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허
가등”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을 “예산”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신청인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허가 부지 인근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운영현황(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을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신청인 제2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 4. (생략)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⑥ (생략)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를 받거나 <u>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실태조사) ① (생략) ② 영 제2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u><신 설></u>	제23조의2(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5년 이내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된 농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u>
제24조(농업·축산업 영위 등에	제24조(농업·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4. (생략)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생략)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생략)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생략)

<신청서>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4항제2호라목-----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4항제2호라목-----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1의2.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허가 부지 인근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운영현황(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단서 신설>

3. ~ 7. (생략)

③ (생략)

<신설>

경우로 한정한다)

2. -----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3.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1.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영농형 태양광 발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농지를 포함한다)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

-----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 허가등 -----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 ----- ----- -----.
② ~ ④ (생략)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①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 (생략)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u>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u>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예산</u>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